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43
----------	------

2025년 3월 6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 31. 최호정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 2025. 2. 6.

다. 상정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5년 3월 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의회에서는 그간 자체 행동강령의 부재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해 왔음. 이에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을 실현하여 투명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및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한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 조례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조례 교육,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등 보칙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 기 타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2. 11.(화) ~ 2025. 2. 15.(토) (5일간)
 - 나) 예고결과 : 없음
 -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조례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및 동 시행령에서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두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될 행동강령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것임.

2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 입법 형태

-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적용대상에 따라 대통령령·국회규칙·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¹⁾ 이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된다고 하겠음.
-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 개인의 이해나 관심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는 점, 일반 국민에게 기대되는 것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으로부터 도출되었음.

1)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헌법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기관에 기관별 행동강령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각 기관별 행동강령을, 헌법 기관에는 규칙의 형태로, 그 밖에 공직유관단체에는 개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두도록 함.

-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여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윤리성 및 국민들의 정부(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²⁾
- 이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제2항).
- 이러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행동강령을 통해 다루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022년 인사권 독립 이전까지 별도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두지 않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 규칙)’³⁾을 적용해 왔음.
- 한편, 행동강령의 입법 형태에 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2호, 2024.9.10. 일부개정) 제4조에서 기관별 행동강령 형식에 대해 ‘지방의회의 장’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2) 국민권익위원회,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2024.12., 9면 이하 참조.

3)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25. 1. 20.] [서울특별시규칙 제4688호, 2025. 1. 20., 일부 개정]).

3 조례안의 구조 및 조문별 검토

가. 조례안의 구조

-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해 총 6개 장 전체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제2장부터 제4장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필요한 사항을4) 공정한 직무수행(제2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제3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제4장)으로 나누어 구체화하였으며, 제5장에서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및 제6장에서 보칙을 통해 교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서울시의회 공무원 행동기준을 정함(안 제1조)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직무관련자 등)를 정의함(안 제2조) -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6조(특혜의 배제)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품위유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상급자로부터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가 있는 경우 처리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직무 수행 시 특정인에 대한 특혜금지를 규정함(안 제6조) - 직무 수행 중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를 규정함(안 제7조) - 정치인의 부당 요구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 공무원의 인사청탁 금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금지(안 제10조) -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위 이용 금지(안 제11조) -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안 제12조)

<p>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7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중 알게된 정보로 거래, 투자 등 금지(안 제13조) - 직무관련자에 대해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금지(안 제14조) - 직무 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요구 금지(안 제15조) - 명목에 관계 없이 일체의 금품 수수 금지(안 제16조) - 감독기관의 피감독기관에 대한 부당 요구 금지(안 제17조)
<p>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부정청탁방지법 사례금 상한액으로 제한 및 신고의무 규정(안 제18조)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제한(안 제19조)
<p>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제2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제23조(징계 등)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 및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 위반자 불명확시 상담절차 규정(안 제20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21조) - 신고내용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 보장, 불이익 금지 등 규정(안 제22조) -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 등 조치 근거 규정(안 제23조) - 수수 금지 금품 등 수령시 행동강령책임관 등에 신고 절차 등 규정(안 제24조)
<p>제6장 보 칙 제25조(교육)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27조(운영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 조례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 시행 등(안 제25조) -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 임명(안 제26조) -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안 제27조)

-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총칙 규정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및 이를 구체화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서 각 기관별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규정함.
-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지난 2001년 7월 제정된 이후 현재 까지 공무원 행동 기준의 기초로 적용되고 있음.

(2)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안 제3조)

- 안 제2조는 정의를 통해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직무관련자, ▶직무 관련공무원, ▶금품등에 대해 규정함.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의회 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특정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자,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직·간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자, ▶서울특별시의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규정되었음.
- 이 때, ‘직무’란 법령 등에 의해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 외에도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타인의 업무 대행 및 타인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되며,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는 개별 공무원의 직무 내용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5)

- (직무관련공무원)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으로서 본 조례안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금품등) ‘금품등’이란 금전, 물품, 사용권 등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 교통·숙박 제공, 채무 면제, 이권 부여 등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재산적 이익, 접대·향응 및 편의제공, 경제적 이익으로 구분해 이를 정의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본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함.
 -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의원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별도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662호)이 적용되므로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에의 적용을 규정한 것임.
 -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2025)’에서는 기관별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대해 파견 공무원은 파견근무 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도록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본 행동강령을 적용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 형태라고 할 수 있겠음.

5) 국민권익위원회, 전계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22-23면.

※ 그 밖에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계약상 관련 의무에 따라야 할 것임.⑥

- 다만, 본 조례안 제3조에서 ‘공무원’에 대한 약칭을 두고 있는데, 자치법규에서 약칭의 사용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목적 조항 제외)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로 약칭 사용의 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정의 규정 등에 대한 수정의견>

조 례 안	수 정 의 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관련자”란 <u>공무원</u>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p> <p>가. ~ 라. (생략)</p> <p>2.·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제3조에 따른 <u>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의 ----- ----- -----.</p> <p>가. ~ 라. (조례안과 같음)</p> <p>2.·3. (조례안과 같음)</p>
<p>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의회위원을 제외한다)과 의회에 파견된 <u>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에게 적용한다.</p>	<p>제3조(적용 범위) ----- ----- ----- <u>공무원</u> ----- -----.</p>

6)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2025)은,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상담원, 일용직, 임시직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나, 필요시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규정에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근거를 명시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리 대상이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된다고 하겠음.

다. 공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안 제4조 ~ 안 제9조)

(1) 직무수행의 기본자세(안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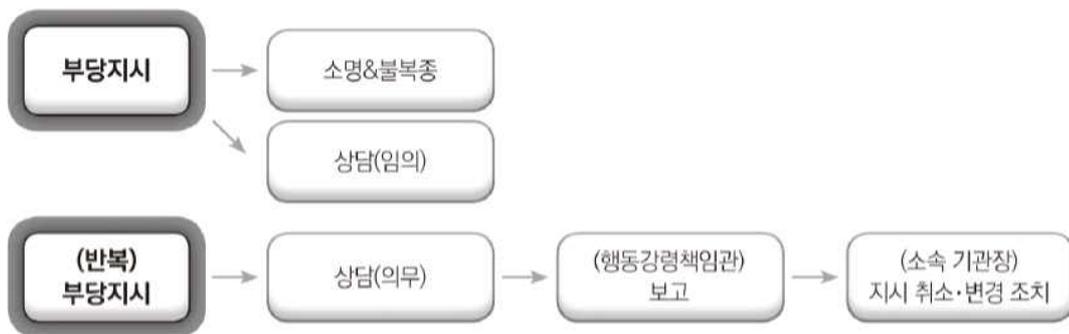
- 안 제4조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자세(제1항)와, 부여된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제2항), 창의성과 발전노력 의무(제3항), 품위유지의무(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사항들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다루고 있는 원칙들임.
 -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상위법령이 직무수행의 기본자세를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등과도 관련되는 내용으로 행동강령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원칙으로서 작용한다고도 할 수 있겠음.
 - 다만, 안 제4조 제4항 각호는 품위 유지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에 비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등 각 품위 훼손 예시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맞는 예시인지 본 행동강령 조례 적용대상 간의 공감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음.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안 제5조)

- 안 제5조는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 해당 지시에 대한 거부 및 행동강령책임관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⁷⁾을 위해 부당한 지시⁸⁾를 한 경우 하급자는 당해 상급자에게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를 거부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후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의장은 필요시 지시의 취소나 변경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처리 절차>⁹⁾



(3)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안 제6조 ~ 안 제9조)

- 안 제6조(특혜의 배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객관적 기준이 아닌 연고나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행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

7) 부당한 이익이란,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 등을 의미하며 금전 또는 무형의 이득을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계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34면.
 8)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할 수 있음(국민권익위원회, 전계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38면.) 고용노동부훈령에 따르면 부당지시에는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 등이 해당됨.
 9) 국민권익위원회, 전계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34면.

- ‘특혜’는 법령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직무수행 상대방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의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특혜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¹⁰⁾
- **안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직무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안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는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직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이 때, 정치인은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정당 등이라 함은 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사조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¹¹⁾
- **안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는 자신의 인사를 위해 타인에게 청탁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인사에 부당개입하지 않도록 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사 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 및 이권개입 등 부당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10) 국민권익위원회, 전개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39면.

11) 국민권익위원회, 전개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48면.

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안 제10조 ~ 안 제17조)

(1)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알선·청탁 금지(안 제10조 ~ 안 제12조)

- 안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이권 개입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 안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는 공무원의 직위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 범위 외적으로 사용(공표·게시)할 수 없도록 하여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인(단체)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안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는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직사회 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또한, 안 제12조제5항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것으로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규정되었음.¹²⁾

(2)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12) 보다 구체적인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 부정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전계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65면을 참고할 수 있음. 업무편람에서는 부정청탁 유형을 8개로 분류(금전 출연/인사·징계/업무상 비밀/계약행위/거래행위/평가, 판정상 혜택 부여/수상, 포상/감사, 조사)하고 있음.

- 이 때,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일체의 정보임.
- 한편,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각 기관별 소관 분야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및 투자를 하거나 타인의 투자를 돕는 것’으로 세부 규정한 것임.
- 이에 관해서는 권익위원회 업무 편람등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검토가 필요한 기관을 일반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상정하지는 않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대상기관을 가상자산 관련 업무 담당 공공기관으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³⁾
-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이들 가상자산,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이 포함되는지는 향후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안 제13조와 관련해서는 제3항에서 ‘제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안 제13조제1항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출 금지와 제2항에서 거래제한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항에서 규정하려는 ‘제한대상’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삭제하여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겠음.

13)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로 이해됨. 또한 가상자산정보 취급 직무유형으로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수립 관련 직무, 가상자산 관련수사·조사·검사 등 관련 직무 등이 예시로 들어지고 있음. 기관장은 가상자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를 추가할 수 있으나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전계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71면 참조.

<안 제13조에 대한 수정의견>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② (조례안과 같음) <삭제>

- (3)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대우 금지 등(안 제14조 ~ 안 제17조)
- 안 제1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공사 구분 없이 공무원이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근대적 관행을 철폐하고 공직사회 내 부적절한 노동력 제공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안 제1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는 공무원 상·하 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간, 공무원과 민간인(직무관련자) 간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전수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것임.
 -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직사회에서의 다양한 ‘갑질’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안 제15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겠음.

<안 제15조에 대한 수정의견>

조 례 안	수 정 의 견
<p>제1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p>1. ~ 3. (생략)</p> <p>4. <u>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u></p> <p>5. <u>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u></p>	<p>제1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 ----- -----.</p> <p>1. ~ 3. (조례안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 **안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는 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적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16조제1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동일하게 ‘일체의 금품등’이라고 규정하며 상위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기준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일체의 금품등’으로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음.
- 조례안과 같이 일체의 금품등에 대한 수수를 금지하더라도 법령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한금액 범위 내라면 벌칙 등의 적용대상은 되지 않고 다만 개별 기관의 징계 대상이 될 것임.
- 금품등 수수 금지의 기준 강화는 청렴도 및 공무원의 주의의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체계에 부합하게 적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이를 반영한다면, 직무와 관련한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의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할 필요가 있겠음.
- **안 제17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는 피감기관이 감독기관(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감사·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공직자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맞지 않게 지원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임.
- 특히 피감기관 공직자에게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여 피감기관 공직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임.

- 다만, 지방의회 소속 직원이 감독기관으로서 피감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견제·감시하며 다양한 법률상 감사의무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전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을 피감기관으로 관철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조례안이 의결되면 피감기관인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 소속 공직자는 본 조례안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피감기관장을 통해 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에게 알리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될 것임.

마.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안 제18조 ~ 안 제19조)

(1)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고액의 사례금 수수가 우회적·간접적 금품수수 통로가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지나친 외부강의등으로 직무를 소홀히하는 부조리를 방지하려는 것임.
- 이 때, ‘외부강의등’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신고 대상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임.
-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음.

(2) 경조사의 통지 제한(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한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의 부당·편법적 금품 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일부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하여 규정하였음.

바. 위반 시의 조치 및 보칙(안 제20조 ~ 안 제27조)

- 그 밖에 조례안의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위반에 대한 조치와 징계, 그 처리 사항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음.
 - 구체적으로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안 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안 제21조), ▶신고인의 신분보장(안 제22조) ▶징계 등(안 제2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안 제24조) 등임.
- 이 중,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안 제24조)와 관련하여 안 제24조 제4항은 공무원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등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이미 공무원이 해당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의 비용 환급에 대해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불분명한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겠음.

<안 제24조에 대한 수정의견>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③ (생략)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p>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하거나 <u>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⑤ ~ ⑧ (생략)</p>	<p>④ ----- ----- ----- ----- 청구----- ----- -----.</p> <p>⑤ ~ ⑧ (조례안과 같음)</p>
--	--

- 안 제25조부터 제27조는 보칙 규정으로 의장에게 조례안의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의회 행동강령책임관을 명확히 언급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4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그간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적용될 별도 행동강령을 두지 않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하던 것을 개선해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행동강령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
- 상위법령인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별 기관의 구체적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두도록 한 취지 등에 입각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항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현황에 적합하지 않거나 일부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안 제13조, 제15조, 제24조).
- 그 밖에, 자치법규의 세부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음.
 - 약칭 규정의 위치 선정 오류 및 약칭의 오사용(안 제2조 및 제3조, 안 제18조),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아 불분명한 해석 발생(안 제5조, 제15조, 제18조), 한자 병기 시의 위치 오류(안 제14조, 제16조, 제23조) 등.
- 이에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조례안 대한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u>공무원</u> 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 라. (생략) 2.·3. (생략)	제2조(정의) ----- -----. 1. -----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 ----- -----. 가. ~ 라. (조례안과 같음) 2.·3. (조례안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제3조(적용 범위) ----- -----

제외한다)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②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생략)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공무원-----
-----.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 따라 공무원-----

-----.

④ (조례안과 같음)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② (조례안과 같음)

<삭 제>

제1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
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
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
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
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
는 안 된다.

1. 공무원은 민원 등의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
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
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3. (생략)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
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
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
하게 전가하는 행위

제1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

----- 사회상규(社會常
規)-----.

제1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1. 공무원이 -----

2.·3. (조례안과 같음)

<삭제>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생략)

② 이 조례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 7. (생략)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③ ~ ⑤ (생략)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삭제>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제18조-----

-----.

1. ----- 공무원-----

2. ~ 7. (조례안과 같음)

8. ----- 사회상규-----

③ ~ ⑤ (조례안과 같음)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2. (생략)

③ (생략)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23조(징계 등) ① (생략)

② 의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금품·향응수수 금지 위반 징

② ----- 외부강의
등을 할 -----

-----, ----- 외부강의등 -----

1. · 2.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

⑤ ~ ⑧ (조례안과 같음)

제23조(징계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수수 -----

<p>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p> <p>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③ (생략)</p> <p>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u>청구하거나</u> <u>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⑤ ~ ⑧ (생략)</p>	<p>-.</p> <p>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③ (조례안과 같음)</p> <p>④ ----- ----- ----- ----- <u>청구</u> ----- -----</p> <p>-----.</p> <p>⑤ ~ ⑧ (조례안과 같음)</p>
---	---

<p>담당 연락처</p>	<p>02-2180-7689</p>
---------------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1명, 찬성 11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4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1월 31일

발 의 자: 최호정, 김 경, 김태수,
박상혁, 이병운, 이성배,
이숙자, 임만균, 장태용,
최민규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그간 자체 행동강령의 부재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을 적용해 왔음. 이에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별도로 마련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청렴 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시민이 신뢰 하는 의정을 실현하여 투명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및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 라.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한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 마. 조례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조례 교육,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등 보칙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의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

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제외한 다)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할 것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할 것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할 것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할 것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

②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③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

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청탁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1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무원은 민원 등의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③ 공무원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

서는 안 된다.

제17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조사·평가 관련 장소·사무기기 제공 외 불필요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에게 신고

③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승인 요청하고, 의장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조례를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같은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은 제2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3조(징계 등)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금품·향응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
 -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⑧ 의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25조(교육) ① 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의장은 신규임용자 교육 등 교육과정에 이 조례에 대한 소양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른 의회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상당 공무원이 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역할을 겸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조례와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 (직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명		직책		
	소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	--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성별)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	------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연락처
	소속 및 직위(직급)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	---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 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체 행동강령의 부재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함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